

고용노동부 인건비 사업



2025년

청년일자리도약장려등

#인건비

#정규직 채용

#치[ዘ

#기업

#720만원

#근로자

#480만원

지원대상

① 기업

- 서울특별시「**종로구·중구·동대문구**」소재 기업
-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연평균
-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<u>*5인 이상</u> 우선지원대상 기업 *[유형1]의 경우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능(별도문의)
- 연매출액이 '기준 피보험자 수 X 1800만원' 이상인 기업
 - * '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' 또는 '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' 증명
 - *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미검토 사항

① 근로자

[공통요건]

- 2025년 정규직 채용자 (`25.1.1.~`25.12.31.) *비정규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자도 참여가능
- 만 15~34세 미만자
- 채용일 현재 취업한 상태가 아닌자

[유형1] *<mark>취업애로청년</mark>에 해당하는 자

[유형2] <u>5인 이상</u>의 제조업 등 **빈일자리 업종**에 취업한 자

[취업애로청년 유형] * 최소 1가지 해당 필수

- 1.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
- 2. 고졸 이하 학력
- 3.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
- 4.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
- 5.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
- 6. 자립지원 필요 청년 (자립준비청년)
- 7. 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자
- 8. 북한이탈청년
- 9.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자 (폐업사실증명원 필요)
- 10.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가입 12개월 미만인 청년

지원내용

① 참여기간 및 신청방법

- `25년 1월 ~ `25년 12월 (상시)
- 고용24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
 - www.work24.go.kr

① 지원내용

-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 1년 지원 (연 최대 720만원 지급)
- [유형2]의 경우 근로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(18개월, 24개월 각 240만원씩 지급)

구분	기업	근로자
유형1	1년간 720만원	-
유형2	1년간 720만원	2년간 480만원

① 지원절차

기업 참여 신청 ► 협약 체결 ► 청년 채용 ► 지원금 신청

① 주의사항

- 인위적감원(고용조정) 발생 및 부정청구 적발 시 사업 참여제한 및 패널티 발생
-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장려금 신청 가능
- 사업 신청일 기준 만 3개월 이전 채용자까지 소급 신청 가능
- 장려금 수급 기업 대상 현장점검 방문 발생
- 사업 참여시 제출한 원본서류는 3년 간 보관 필수